

-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필수공정 미이행]

☞ < 모든 품목 > 직생 취소 및 < 6개월 > 신청 제한

사례1) 타사에서 일부 필수공정 수행

A사는 타사에서 일부 필수공정을 통해 생산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 조립 후 공공기관에 납품

사례2) 직접생산 미확인(또는 반납한) 공장 생산

B사는 최초 ○○ 주소지에 소재한 생산공장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으나, 수요 기관의 납품 시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아니한(또는 반납한) 타 지역의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

사례3) 타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활용

C사는 타사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자사 직원이 생산한 물품을 납품
C사는 타사의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자사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

사례4)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

E사는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사례5) 타사 상표 부착

D사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타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하청생산 등

☞ < 모든 품목 > 직생 취소 및 < 6개월 > 신청 제한

사례1) 수요기관이 호환성, 규격, 긴급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하청생산

A사는 수요기관이 호환성을 사유로 특정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타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 그간 법원은 일관되게 수요기관의 요구로 하청생산(완제품 구매)하여 납품한 업체에 대한 직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해결 해야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3개)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 제조업만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중소기업지원제도
→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납품하면 처분대상이 됨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
- 재신청기한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기관 안내

■ 직접생산확인 신청 ·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80
---------	--------------

■ 공공구매정보망(SMPP) 회원가입, 공공구매론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	--------------

■ 중기간경쟁제품의 공공기관 발주 미이행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중기청



• 이렇게 하면
직접생산확인 **우반**

안돼요~~안돼!!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직접생산 위반 사후관리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수요기관 등에서 하청생산 등 직생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 행정처분 수행
 - 또한 정기적으로 직접생산확인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 조달청에서는 납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생 위반 조사를 수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요청
 - **공공기관 납품시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구**

●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확인 위반시 처분

- 판로지원법 : 직생 취소 및 신청제한, 과징금 부과의 처분**
 - 국가계약법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해당 품목 계약해지 및 다른 품목 거래정지
 - 계약보증금 환수 등
 -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 및 하청생산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 기타(대외무역법 등) : 사기, 과징금 등의 제재 대상

● 위반 사항별 처분내용 (판로지원법)

위반 사항	취소대상	신청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모든품목	12개월
②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 직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6개월
③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모든품목	6개월
④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모든품목	6개월
⑤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수 양도, 합병 (포괄양수양도 제외)의 경우 (30일 이내 직생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3개월 이내



● 위반 사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 모든 품목 > 직생 취소 및 < 12개월 > 신청 제한

✓ 사례1) 타사 생산시설 활용 직접생산확인 취득

A사는 ○○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여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B사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음

✓ 사례2) 제출서류 위조를 통한 직접생산확인 취득

C사는 ○○ 제품에 대해 기준 인력 충족을 위해 생산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4대보험 가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 받음

-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후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 직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품목 > 직생 취소 및 < 6개월 > 신청 제한

✓ 사례1) 생산시설 일부 매각

C사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생산공장의 생산시설 중 일부를 타사에 매각 후 공공기관에 생산 납품

✓ 사례2) 동일 소재지 복수 공장

D사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공장을 분할하여 일부 면적을 타사에 임대하면서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 30일 이내 직생 반납처리 하지 않음

✓ 사례3) 근로자의 퇴사

E사는 경기불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여 직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공공 기관에 생산 납품

※ 조달청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계약업체의 근로자 4대보험 자료 등을 통보 받아 직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치 못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소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바 각별히 주의요구

→ 이미 받은 직생을 반납처리하고 확인기준을 충족 후 재신청 해야 행정처분 (6개월 신청제한 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음